사 업 명

(72)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(2139-302)

1. 사업 코드 정보

구분	회계	소관	실국(기관)	계정	분야	부문
코드	11	23	인구정책실		080	08B
명칭	일반회계	보건복지부	노인정책관		사회복지	노인

구분	프로그램	단위사업	세부사업	
코드	2100	2139	302	
명칭	노인생활안정	노인일자리지원	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	

2.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

직접	출자	출연	보조	융자	국고보조율(%)	융자율 (%)
					서울 30%,그 외 50%	
					민간 100%	

3. 예산 총괄표

(단위: 백만원, %)

사업명	2022년	2023년 예산	202	4년	증감	
71 11 6	결산	본예산(A)	정부안	확정(B)	(B-A)	(B-A)/A
노인일자리 및	1 429 070	1 540 016	2.026.170	2.026.270	196 251	21.6
사회활동 지원	1,438,070	1,540,016	2,026,170	2,026,370	486,354	31.6

4. 사업목적·내용

- 취약노인의 소득보충 및 건강하고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

5.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

① 법령상 근거: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

제23조(노인사회참여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,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제23조의2(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・운영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・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・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・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추진경위

- '02년 : 대통령 선거공약 '고령자 인력관리센터 설립'과 노인의 사회적일자리 50만개 창출(인수위)
- '03.4.4 : 참여정부 노인복지 4대 핵심 국정과제(공약)에 포함
- '04.1.1 : 노인인력운영센터(국민연금관리공단 내) 설치(개소식 1.29)
- '04.1.14 : '07년까지 노인일자리 30만개 창출 국가실천전략 발표(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)
- '04.9.1 :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확대 (70개소 → 248개소)
- '05.1.1 : 시니어클럽 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이양(지방이양)
- '05.12.27 : 중앙일자리전담기관 업무를 담당하는 재단법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설립
- '08.3 : 이명박정부 "노인소득보장 및 사회참여기회제공" 국정과제 선정 * '12년까지 정부지원일자리 20만개, 민간분야 일자리 10만개 창출
- '13.3: "노인일자리 확대" 국정과제 선정
- '14.9 : '노인 재능나눔 활동지원' 시범사업 실시('14년 신규, 3만명)
- '17.5 : 국정과제 43. 고령사회 대비,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
- '18. 2 : 제2차 노인일자리 종합계획(사회보장위원회 심의)
- '19 :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실시

6. 주요내용

① 사업규모

- 총사업비(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) :

- 사업기간 : '04년부터~

② 사업추진체계

- 사업시행방법 : 직접수행, 보조

- 사업시행주체 : 지자체, 한국노인인력개발원, 대한노인회, 노인지원재단 등

- 사업 수혜자 : 만65세 이상 (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)

- 보조, 융자, 출연, 출자 등의 경우 보조・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

내역사업명	구분	피보조 · 피출연 등 기관명	지원 금액 (2024 예산)	지원 비율(%)	보조율 법적근거 (해당 조항)
노인일자리 및	보조	지자체	1,799,455	서울 30%,	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사회활동지원		보조	1,1 77,400	그 외 50%	
확대	보조	민간보조	196,290	100%	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한국노인					
인력개발원	보조	민간보조	21,746	100%	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운영지원					
대한노인회					
취업지원센터	보조	민간보조	8,742	100%	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운영지원					
노인일자리 및	직접수행	민간보조	137	100%	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
사회활동 운영	71178	인선보조	137	100 /0	포크급 인터에 인인 업발

7. 사업 집행절차

ㅇ 사업 추진체계



ㅇ 세부 시행절차

구 분

1단계 기본계획 수립

보건복지부 광역 시·도 및 기초자치단체

주 요 내 용

- 보건복지부
 - 노인일자리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도별 예산배분
- 광역 시도
 -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
- 시군구별 사업량, 전담인력 및 예산 배분계획 수립 후 통보
- 기초자치단체
 - 광역 시ㆍ도 내시기준 및 내용에 따라 시ㆍ군ㆍ구별 자체계획 수립 및 전산등록
 - 노인일자리사업 위원회 구성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, 심사 및 지정
 - 선정된 사업수행기관별 사업량, 예산 및 전담인력 등 배분
 - 사업수행기관 위탁계약 체결

2단계 사업계획 수립

ALC: U

4

사업수행기관

- 노인일자리 사업계획 등록 및 심사
 - 노인일자리사업 업무(새누리)시스템 단위사업 계획서 등록 및 심사신청
- 지자체 및 보건복지부(개발원) 심사승인

3단계 사업추진준비

사업수행기관

- 참여자 모집 및 선발
- 공개모집이 원칙이며 유형별 선발기준에 의해 선발
- 수요처(수요자) 개발 및 선정
 - 참여노인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역(근무지) 협의·개발 및 선정
 - 서비스이용자 발굴 및 선정

4단계 참여자 교육

Same.

-hand-

describe.

사업수행기관

○ 소양 및 직무교육 실시

- 사업운영에 필요한 규칙 및 안전교육 등 실시
- 직무능력을 습득하도록 유형별 전문교육 실시

5단계 근무관리, 보수지급

사업수행기관

○ 근무관리

- 근무일지 기록, 관리 및 현장 수시방문 등을 통해 사업수행 상황 관리
- 보수지급
 - 근무일수 확인 후 개인별 보수지급

6단계 사업평가

사업수행기관

○ 만족도조사

- 참여자, 수요처 및 서비스이용자 등 만족도조사 실시
- 사업평가
 - 추진사업에 대한 종합분석 및 점검
 -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여 발전방안 모색